

육류의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법제화의 의미

전국한우협회

1.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의 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 등에 있어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둔갑판매가 빈발하고 있으나 둔갑판매에 따른 마땅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규정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통현실로 이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응키 위해 협회는 수년전부터 정부에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법제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여야에서 의원입법으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법안심사 계류 중에 있어 6월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는 한우고기로 젓소고기는 젓소고기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로 음식점에서 표기하고 파는 제도적 틀이 필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음식점 등 관련종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을 정당하게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음식점 범위를 식육을 전문적으로 구입 판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으로 한정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협회의 주장입니다. 또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동 제도의 시행만으로도 유통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93년 판매점에서의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도입시에도 무자료 거래와 실효성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소비자의 감시·홍보·계도·단속 등에 의해 지금은 정착(이행율 96%)되었습니다.

2.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들은 한우산업을 후세에게 안정된 직업의 하나로 물려주기 위해 육류의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육류음식점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을 숙지하시고 소비자나 국회의원, 관련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 썩어야가 아닌 나부터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어 한사람 두사람에게 홍보하고 설득해 나갈 때 우리가 염원하는 육류음식점원산지 표시제는 법제화 될 것입니다.